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창업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창업지원단), 02-970-9023

제정 2022. 2. 17. 일부개정 2022. 4. 28. 개정 2022. 11. 4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의 창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교원"이라 함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」 제 2 조제 2 항의 전임교원을 말한다.
- 2. "교원창업" 이라 함은 교원이 재직 및 휴직 중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,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벤처기업, 중소기업,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(이하 "기술지주회사"라 한다.) 자회사를 교내·외에서 창업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사내이사 등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- 3. "겸직"이라 함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」 제 50 조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.
- 4. "휴직"이라 함은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활동할 목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교수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는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
- 5. "창업자" 라 함은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6. "창업기업" 이라 함은 교원이 창업한 기업을 말한다.
- 7. "벤처기업"이라 함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 2 조 및 제 2 조의 2 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.

- 8. "창업"이라 함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 2 조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한다.
- 9. "자회사"라 함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제 9 호에 규정된 회사를 말한다.
- 제3조(교원창업의 기본 원칙) 교원창업에 따른 활동은 교원이 담당하는 교육, 연구, 봉사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- 제 4 조(주관부서) ① 교원창업에 관한 사항은 창업지원단에서 주관한다.
 - ② 교원창업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등은 산학협력단에서, 겸직 및 휴직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.
 - ③ 그 외 교원창업에 관한 사무의 분장은 각 부서장의 협의를 통해 총장이 정한다.

제 2 장 교원창업심의위원회

- 제 5 조(교원창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① 교원창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지원단 내에 교원창업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.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단장, 창업지원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창업지원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 3인을 합한 총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창업지원단장으로 한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제 6 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교원창업에 대한 대학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 - 2. 교원창업에 대한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3. 교원창업에 대한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
 - 4. 교원창업 기업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 - 5. 교원창업에 따른 대학의 지원(투입)분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교원창업 및 교원창업 기업에 관한 사항
 -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학내 소속 위원 외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제 7 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회는 창업교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3 장 교원창업에 대한 심의 등

- 제8조(교원창업의 승인)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창업에 필요한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창업지원단에 제출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개인사업자는 교원창업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. 〈개정 2022. 4. 28〉
- 제 9 조(신청자격) 창업자는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」 제 2 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전임교원으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 - 1. 본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교원
 - 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3년 미만 근속한 교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.
 - 가.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
 - 나.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다.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제 10 조(교원창업 신청)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소속학과(부서)를 통해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. 00. 00.〉
 - 1. 별지 1의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 1부
 - 2. 별지 2의 교원창업기업 사업 요약서 1부
 - 3. 별지 3의 교원창업기업 사업계획서 1부
 - 4. 별지 4의 창업규정 준수 및 윤리이행 서약서 1부
- 제 11 조(교원창업 승인기준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업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 - 1.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
 - 2. 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여부
 - 3. 국가적, 사회적 이익에의 배치 여부

- 4. 창업을 통한 본교에의 기여 가능성 여부
- 제 12 조(교원창업의 심의 및 승인 등) ① 창업지원단은 창업을 희망한 교원의 소속 학과(부서)에 심의결과를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학과(부서)는 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교원창업 관련 겸 직 및 휴직 신청 절차를 실시한다. 〈개정 2022. 4. 28〉
 - ③ 창업자는 창업에 관한 총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,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, 주주확인서(법인인 경우) 등을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창업지원단은 창업자의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제 12 조제 2 항에 따른 총장 승인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(교무처, 단과대학, 소속학과(부서) 등)에 통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. 4. 28〉
 - ⑤ 창업자가 제3항의 기한 내에 겸직허가를 받아 창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업승인은 무효로 한다.

제 4 장 교원창업에 대한 지원과 의무 및 제한

- 제 13 조(교원창업 지원 등) ① 총장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 시설의 사용 등 그 밖의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교원창업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교원창업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총장은 교원창업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총장은 교원창업 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정보의 중계 및 알선, 기술 및 특허업무, 회계, 마케팅 및 법률 분야 등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④ 총장은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창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고, 본교의 지원을 받아 성공한 창업자는 주식 및 현금출연 등 본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 14 조(교원창업 지원의 내용 등) ① 창업의 승인 기간 내의 창업자에게는 '재정적 기여 기준' 달성도에 따라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승인을 통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강의시수를

학기당 3학점 이내로 감면받을 수 있다. 다만, 학생지도 및 연구수행은 겸직 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.

- ② 창업자의 창업실적을 교원 업적평가에 반영한다. (재정적 기여 및 졸업생의 고용창출 실적을 교원 업적평가에 반영한다.)
-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원창업 후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」에 따라 경직 허가를 받은 교원은 '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과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'으로서 상호약정을 하였을 경우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창업연구년제 연구교수 선정 등에 대해서는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규정」을 따른다. ④ 제13조제1항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비용 등은 교원 창업기업이 부담하되, 비용의 산정기준은 본교 내부인에 대한 사용기준을 적용하며, 사용료 기준이 없는
- ⑤ 교원 창업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교내 사무공간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창업보육센터 내 사무공간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다.
-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이 ㈜서울과학기술대학교기술지주 자회사인 경우 사무공간을 유·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- 제 15 조(겸직 및 휴직) ① 이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창업하고 해당 회사의 임·직원으로 겸직하거나 휴직하려는 창업자는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」 등에 따라 관련부서를 통해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〈삭제 2022. 4. 28〉

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.

- ③ 〈삭제 2022. 4. 28〉
- ④ 휴직과 겸직의 연장을 희망하는 창업자는 휴직 및 겸직 기간 종료 3개월 이전 위원회에 재정적 기여 이행실적과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소속 학과 (부서)를 통해 휴직 또는 겸직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. 4. 28〉
- ⑤ 제 4 항에 따라 위원회는 창업자의 재정적 기여 이행실적과 계획을 심의하고, 그 결과를 창업자 및 관련 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2. 4. 28〉
- ⑥ 총장은 제1항에 의하여 겸직 및 휴직된 창업자가 복직하거나 겸직이 종료되는 경우 겸직 및 휴직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
- ⑦ 〈삭제 2022. 4. 28〉

- 제 16 조(기술실시계약의 체결) ① 창업자가 본교의 보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 - ② 제 1 항에 따른 기술실시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 17 조(창업자의 재정적 기여) ① 창업자는 최초 창업 겸직·휴직 신청 시에 창업기업 보유 주식의 5%(단, 창업기업 자본금 1억원 이하 5% 주식비율계속유지 조건)를 산학협력단 기부금에 무상기부하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본 규정 제정 이전에 겸직·휴직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예외로한다. 단, 본 규정 제정 이전에 겸직·휴직 승인을 받은 창업자의 경우에도 창업에 따른 겸직 또는 휴직을 연장할 경우 재정적 기여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받아야 한다.
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창업기업이 ㈜서울과학기술대학교기술지주와 자회사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에 따른다.
- 제 18 조(정보의 유출금지) ① 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본교로부터 획득한 모든 정보를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못한다.
 - ② 제1항은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, 창업시작부터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.
- 제 19 조(자료의 제출) 창업으로 인하여 휴직·겸직이 허용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 1회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창업지원단 및 학교 관계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창업기업의 현황자료
 - 2. 창업기업의 재무제표
 - 3. 그 외 심의와 승인에 필요한 서류
- 제 20 조(창업자의 고지의무)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 - 1. 제 8 조에 따른 창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교의 기술 및 공간 등을 유용한 경우
 - 2. 제 15 조제 4 항에 따른 휴직과 겸직의 연장을 위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교의 기술 및 공간 등을 유용한 경우

- 3. 사적으로 본교의 기술 및 공간 등을 유용한 경우
-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취득한 이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손해배상금은 본교의 기술사업화에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장은 창업자에게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가 포함된 창업기업의 결산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창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제 21 조(창업기업의 변경신고) 창업자는 창업 승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창업지원단 등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 - 1.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
 - 2.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
 - 3. 법인 전환
 - 4. 사업자등록증 상의 변경
 - 5. 그 외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변경
- 제 22 조(창업 승인의 취소) ① 총장은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 - 2.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
 - 3. 창업자가 본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
 - 4. 창업자가 본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
 - 5. 창업자가 본 규정에 따른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 - 6. 본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(지식재산권, 노하우 등)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
 - 7. 창업겸직 교원의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 등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
 - ② 총장이 제1항 중의 사유로 창업승인을 취소하는 경우, 창업대상기술의 허여 결정, 휴직 및 겸직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제5장 보칙

- 제 23 조(창업대상기술) 교원창업 대상기술은 본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를 말한다.
- 제 24 조(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) 창업 휴직·겸직 승인 기간에 창업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될 경우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창업기업의 합병, 매각, 양도 시 산학협력단 소유의 지식재산권과 노하우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본교 산학협력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2. 기타 산학협력단 소유의 지식재산권과 노하우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산학협력단 및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 - 3. 창업기업이 합병, 매각 또는 폐업을 할 경우 모든 채권 및 채무관계의 해소에서 대학과 창업지원단 및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.
- 제 25 조(통계의 관리) 창업지원단, 산학협력단, 대학인사위원회 등은 교원창업 신청 및 승인, 겸직과 승인, 기술실시계약, 창업기업 등에 관한 자료와 관련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 26 조(세부운영지침)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<제665호, 2022. 2. 17.>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원창업은 이 규정에 따라 창업한 것으로 보며,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창업지원단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② 총장은 신고 창업자가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부 칙<제686호, 2022. 4. 28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718호, 2022. 11. 4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교원창업 승인 신청서

	성	명				,	교원번	호 <u></u>					
신청자	소	속			직 급					용일자 속연수)	(· 년	· · 월)
	주	소	(우:)								
		업 명					설립	예정	}				
창업회사	자 .	본 금	원	위		<u>-</u>	창업	분이	ŧ				
	고용	-인력					업종/	'업태					
	소 :	재 지	(우:)								
	특히	허와							¹ 기(<u>'</u> }			
		' ' 계된							구비				
창업기술		" L 과제명							¹ 기(<u>'}</u>			
								연-	구비				
O I TE		'과제						 위1	탁자				
]원 											
	기술의 명칭								명자				
~1 +1 1		록번호						_ 소·	유자				
창업자													
	& 사												
창업기2													
주 주	진계획												
위와 같	이 교	원창업	지원을	신청	성합니다	•					년	월	일
							신	청	자	:		('	인)
첨부서류: 1. 교원창업 요약서 1부. (별지 2호 서식) 2. 교원창업 사업계획서(저장매체포함) 1부. (별지 3호 서식) 3. 창업규정 준수 및 윤리이행 서약서 1부. (별지 4호 서식)													

(별지 2)

(발시 <i>L)</i>		A Al					
	요 약 서						
	(교원창업기업 사업 요약)						
평가	세부지표	핵심내용					
지표		(교수 등 예비창업자 작성)					
후속	보유기술 기반 창업 가능성	 보유기술 개요 창업유망기술에 대한 선행연구 진행상황에 대해 작성 현재 기술개발 수준 					
R&D	수요기술(경쟁기술)과 보유기술간 연계성	 보유기술의 경쟁사 및 경쟁기술 개요 · 경쟁기술 대비 보유기술의 장점 및 차별요소 · 보유기술 개발을 위한 팀원(창업팀)의 역할 작성 					
창업	고객 발굴 및 니즈	· 잠재 고객 발굴 · 잠재 고객의 니즈 및 문제점* 파악 * 기존 제품 미존재로 인한 문제 및 기존제품의 문제 · 잠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작성 · 시장규모					
· 준비 활동	기업 설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 계획 ·최소 3개년의 계획 제시	 창업 시작단계에서의 구체적인 계획 ※ 어떤 고객에게 어떤 제품을 얼마로 팔 것인가?(판매계획), 인원확보(고용) 계획, 제품 유통 계획 등 · 창업기업 성장단계에서의 구체적인 계획 작성 ※ 자금 확보(투자유치 등), 지원사업 활용 계획 등 창업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계획 					
예산 사용	사업추진 일정 및 단계별 예산 투입	·사업추진 일정 및 단계별로 예산이 투입 계획					
가 상 계획	창업준비 활동 일정 및 단계별 예산 투입	· 창업준비 활동 일정 및 단계별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는가?					
	9	02 년 oo월 oo일					
	Z						
		신 청 자 : (인)					

(별지 3)

교원창업기업 사업계획서

20 . . .

제출자	성 명	소 속	
	연락처	E-MAIL	

목 차

i /l
I . 사업 추진계획 ······
1. 사업목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1. 기념기요 2. 보유기술 개요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2. 上
Ⅱ. 창업 준비 활동 계획
1. 창업 목표
2. 창업 준비 활동
3. 창업(기대)성과

작성요령 * 작성 요령은 보고서 작성 후 삭제바랍니다.

- 교원창업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임을 감안하고 작성
- 분량 제한 없으며 상세하게 작성

I. 사업 추진계획

1. 사업추진 목표

작성요령 * 작성 요령은 보고서 작성 후 삭제바랍니다.

-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최종적인 추진 목표 (경제적, 사회적 이득) - 본 사업을 통해 사회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 등
- 가. 사업의 최종목표
- 나, 본 사업 추진기술•제품의 필요성
- 2. 보유기술 개요

작성요령 * 작성 요령은 보고서 작성 후 삭제바랍니다.

- 기존 존재하고 있는 기술 대비 보유기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, 차별성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내 용 작성
- 본 기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 관점에서의 가치
- 교원창업관련과 관련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, 보유특허 및 기술에 대한 내용 작성
- 가. 보유기술의 핵심내용 및 우수성(차별성 및 경쟁력 등)

나. 보유기술의 해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고객 가치 (고객 관점에서 얻게 되는 이득 또는 해결할 수 있는 핵심문제)

다. 교원창업관련 연구성과, 보유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·등록 현황

- 교원창업관련 분야 연구 성과 현황

순번	논문제목	저널명	게재년월	비고
1				00대학 공동 연구
2				
3				

- 교원창업관련 보유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·등록 현황

구분	출원/ 등록	명칭	등록(출원) 년도	등록(출원) 번호	등록(출원) 인
국내					
특허					
국외					
특허					

라. 활용 기술 내용 및 방법

- 기술개발단계(TRL) 단계

구분	현재	목표(창업 시)
TRL 단계 및	2	5
상세 기술 수준 내용	(TRL작성요령 참고 하여 작성)	(TRL 작성요령 참고 하여 작성)

- 보유기술의 연구개발 결과물((ex)oo소재 개발) 작성
- 연구개발 결과물을 바탕으로 사업화 대상이 되는 최종 제품 (서비스 등) 작성
- TRL 단계등은 다음장의 TRL 작성요령 참조

TRL 작성요령 * 작성 요령은 보고서 작성 후 삭제바랍니다.

○ TRL 단계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단계	주제	세부설명
idea		idea 도출	* 수많은 MRS(시장요구사항)를 구축하여 기업의 의지를 담은 기술개발로드맵 작성
도출	4 1 11		
기초	1단계		* 기초이론 정립 단계 * 기술개발 개념정리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
연구	2단계		
단계			* 성능/기능/규격을 고려한 상세 스펙 작성
	3단계		*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
,1=1	,,	성능 검증	* 개발하려는 부품/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
실험	실험실 규모의	* 시험 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	
- 단계 -	4단계	소재/부품/시스템 핵심성능	*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
	112/11	평가	*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
		6/1	*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
			* 확정된 소재/부품/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단계
			* 개발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~수개 미만인 단계
	5단계	확정된 소재/부품 시스템	*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만 볼 때,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
	012/11	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	성능을 달성한 단계
			* 의약품은 GMP(good manufacturing practice, 제조품질관리기준) 파일럿, 설비 등을
			구축
시제품			* 파일럿 규모(여러 개 ~ 양산의 1/10 규모)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
단계			*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, 생산용량, 불량률 등 제시
	6단계		*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
		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	* 생산 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
		성능 평가	만족시킨 단계
			* 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
			* 의악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(Good Laboratory Practice, 동물실험규범) 기관에서
			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
			*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
			*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작품을 현장 평가(성능뿐만 아니라
	7단계	신뢰성 평가 및 수요기업	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)
실 용 화		평가 	* 가능하면 KOLAS(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)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결
단계			과 제출
			*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단계 *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
	8단계	시제품 이즛 및 표준하	*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단계
	0 47 11		*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 허가 단계
사업화	O1-J-3J	기신위	*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
단계	9단계	사업화	* 6—sigma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
		_	
마케팅		마케팅	* 미케팅 활동 및 영업 지원

(별지 4) <개정 2022. 4. 28.>

창업규정 준수 및 윤리이행 서약서

성 명	소속	직 급	기업명	설립자본금 (천원)	사업분야

관련규정 : 창업규정 제23조

- □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성원 중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정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.
 - 1. 교원 창업 신청인은 창업의 신청-심의-승인 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운영 전 과정이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원윤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스스로 실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한다.
 - 2. 교원 창업 신청인은 <교원창업심의위원회>에서 마련한 교육을 필하여야 한다.
- □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창업기업이 창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 - 2.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
 - 3. 창업자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
 - 4.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창업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
 - 5. 창업자가 본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 - 6. 본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(지식재산권, 노하우 등)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실시(사용) 하였을 경우
 - 7. 창업겸직 교원의 창업활동이 교육과 연구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

□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대상기술의 허여 결정 및 교직의 휴/겸직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위 창업신청 건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규정을 준수하였으며, 위 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계약 및 분쟁 등의 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창업승인은 취소되며,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 보고
 보고

 보고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